

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(제100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	
		1회	2회	3회	4회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81조 제1항제1호	지정 취소			
나.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	법 제81조 제1항제2호	지정 취소			
다.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1) 시설·장비·인력, 조직이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) 시설·장비·인력, 조직이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	법 제81조 제1항제3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라.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81조 제1항제4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	
마.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 1)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경우 2)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	법 제81조 제1항제4호	경고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 취소
	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 취소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81조 제1항제5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 취소